

I. 緒 論

高度의 經濟成長과 社會變化에 따라 國民福祉에 對한 問題가 重要한 社會論點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國民福祉에 있어 健康은 가장 主된 要素의 하나로 간주된다.

專門職看護員은 健康을 이룩하는 重要人力의 하나이며 憲法을 基盤한 醫療法과 諸規定이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定義하고 있다.

그러므로 看護員은 看護와 關係된 法令의 規定을 아는 것이 重要하다. 看護關係法令에 對한 知識은 看護員의 義務와 責任을 効果的으로 進行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醫療法令」은 醫療에 關係된 基本法令으로서 醫療人인 專門職看護員은 醫療法令에서 規定하고 있는 事項을 자세히 알고 또 준수해야 할 것이다.

「醫療法令」이라고 할 때에는 醫療에 關係된 모든 「法令」를 뜻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醫療에 關한 一般法인 「醫療法」(以下 法이라 한다)과 大統領令으로 制定된 「醫療法施行令」(以下 令이라 한다) 및 部令으로 制定된 「醫療法施行規則」(以下 規則이라 한다)에 限하여 「醫療法令」의 범주로 하였고 看護와 關係된 規定을 土臺로 하여 法體系에 따라 내려가면서 施行단계에서 上位法에 對한 違背與否와 現實的으로 不合理한 規定有無 및 看護專門職의 實現을 潛害하는 法令與否를 基準으로 問題點을 分析 表出하고 그 改善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이 영 자

(국립서울병원 간호과장)

—차례—

I. 緒 論

II. 本 論

1. 看護員의 免許資格
2. 國家試驗
3. 看護員의 任務
4. 看護記錄簿
5. 看護員의 定員·策定
6. 看護員 定員에의 看護補助員의 充當
7. 助產員, 看護員의 呼稱

III. 緒 論

II. 本 論

1. 看護員의 免許資格

法第7條에서 看護員의 免許要件을 規定하고 있는데 同條第1號에서 “看護學을 專攻하는 大學, 專門學校 또는 看護學校를 卒業한 者”로 되어 있는 바 現在로서는 看護專門學校가 學制改正으로 因하여 看護專門大學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看護員의 免許資格要件으로 同條第1號의 “大學” 다음에 「專門大學」을 追加挿入해야 할 것으로 본다.

2. 國家試驗

醫療人이 免許를 獲得하기 위하여는 法第9條에 依據 每年 保健社會部長官이 施行하는 國家試驗에 合格해야 되는데 試驗實施科目에 대하여는 法第9條 2項에서 大統領令인 「…施行令」에 委任하였다.

그런데 令第12條에서 다시 保健社會部令에 再委任, 「規則」에서 規定토록 했는데 첫째, 「法」에서 委任한 「令」에 規定하지 않고 部令인 「規則」에 再委任 規定하고 있음은 法第9條第2項에 違背되며, 둘째, 「規則」 第8條第1項에서 規定하고 있는 試驗科目에 있어서 試驗種別 中 看護員 國家試驗科目으로 18個의 科目을 包含하고 있으나 이는 現行 看護教育制度上의 教諭科程과 差異가 있어 現實과 거리가 먼 痞이 있다.

따라서 看護員 國家試驗科目으로 成人看護母性看護學, 兒童看護學, 地域社會看護學, 精神看護學, 看護管理學, 保健醫療關係法規로 組成된다고 본다.

3. 看護員의 任務

法第2條第1項에서 醫療人の範圍를 規定하여 助產員 및 看護員도 醫療人の 범주에 포함되어 있고 第2項第4, 5號에서 助產員과 看護員의 任務를 規定하였는 바 第5號에서 看護員의 任務를 傷病者 또는 解產婦의 療養上의 看護 또는 診療의 補助에 從事함을 任務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와같은 规定은 前近代的 思考方式속에서 脱皮되 못한, 즉 看護員은 醫師에게 從屬되어 있는 職種"임을 나타낸 타당치 못한 規定이라 할 것이다.

一般看護員의 機能은 대체로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獨自의 機能으로서는 ① 患者(被看護者 全部)를 도와주고, 들보고 감독하는 일 ② 症狀 및 反應에 對한 觀察 ③ 看護記錄 ④ 補助職을

指導, 指揮, 監督하는 일 ⑤ 專門的 看護施術의 實施 ⑥ 患者와 大衆의 健康管理 및 保健教育, 社會奉仕 等이며 마지막 非獨自의 機能으로서 ⑦ 診療補助, 즉 醫師의 처방과 責任 아래서 實施되는 藥物投與, 特殊治療등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와같이 看護員의 機能은 그 大部分이 獨自의 機能이고 7가지 기능 중 오직 한가지의 機能, 즉 診療補助 (이 亦是 協助라고 表示하는 것이 타당함)機能만이 非獨自의 機能임에도 불구하고 法第2條에서 “…診療補助에 從事”하는 것을 主된 任務로 表示한 듯한 느낌을 주도록 規定한 것은 一般社會人們과 醫師自身들이 잘못 認識을 갖게 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想慮된다.

우리가 獨自의 機能을 遂行한다고 해서 결코 他機能과 斷切的關係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各自 獨立의 位置와 機能을 保持하면서 하나의 目標(例, 人間의 健康)를 向해서 綜合的機能을 遂行하는 相互依存의이며 對等한 關係를 意味하는 것이다.

設使 非獨自의 機能의 하나로서 診療補助 역시 醫師의 處方과 指示에 따른 藥師의 調劑業務와 看護員이 이에 대한 投藥을 하고 그 結果를 觀察, 記錄, 報告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共同作業을 통해 환자의 건강회복이 한 目的達成을 위해 서로 다른 獨立의 機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밀접하게 協同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設使 看護員이 醫師로 부터 指示를 받고 報告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곧 의사와 간호원의 關係를 生從關係, 隸屬的 關係로 볼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원을 의사의 附屬物로 보면 舊時代의 封建의 殘渣를 하루속히 拂拭시켜야 하며 그하기 위하여는 “看護員은…診療의 補助에 從事”에서의 補助를 協調로 改正하는 것이 獨立된 專門職으로서의 位置를 가져오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第5號의 看護員의 任務를 “傷病者 또는 解產婦의 療養上의 看護 또는 保健管理 調整 및 看護指導의 實施와 診療의 協助에 從事함을 한다”라고 改正되어야 할 것이다.

4. 看護記錄簿

看護記錄簿는 法第21條의 規定에 依하여 備置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記錄해야 할 事項은 規則第17條第3號에서 다음과 같이 明示하고 있다

- ① 體溫, 脈搏, 呼吸, 血壓에 關한 事項
- ② 投藥에 關한 事項
- ③ 摄取 및 排泄物에 關한 事項
- ④ 處置와 看護에 關한 事項을 記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같은 記錄만으로는 철저하고 効果의인 看護記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物理의인 治療(看護)事項뿐만아니라 心理的이고 科學의인 看護記錄을 위하여는 看護記錄簿의 記載書式을 변경 改善할 필요가 있다.

즉, 規則第17條第3號 看護記錄簿의 記載事項을 다음과 같이 具體의으로 記錄하도록 規定에 插入하여야 한다고 본다.

- ① 看護를 받는 者의 住所, 姓名, 生年月日, 性別, 住民登錄番號
- ② 健康歷 看護歷, 家族歷
- ③ 看護要求 查定에 關한 事項
- ④ 看護診斷內容에 關한 事項
- ⑤ 看護計劃 및 遂行에 關한 事項
- ⑥ 診療協助에 關한 事項
- ⑦ 保健醫療員間의 調整에 關한 事項
- ⑧ 看護過程의 評價內容에 關한 事項

5. 看護員의 定員 策定

令第24條第1項第3號에서 醫療機關의 看護員定員을 “1日 平均 入院患者 5人에 對하여 看護員 2人을, 外來患者 12人을 入院患者 1人으로 算定, 즉 外來患者 30人에 看護員 1人을 두도록 算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規定은 現實을 忘却한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手術室, 重患者室, 應急室, 中央供給室, 回復室 等을 考慮치 않고 平面의인 入院患者 또는 外來患者數만을 基準으로 定員을 策定한다면 實際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患者的 病質 및 그 程度, 入退院의

頻度 等 諸要因이 業務量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감안하여 現行「患者數比率法」에 依한 看護員 策定基準에서 「患者分類法」에 依한 定員을 策定하도록 그 基準이 改正되어야 한다.

6. 看護員 定員에의 看護補助員의 充當

令第24條第2項第4號에서 “保健社會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따라 必要한 數의 看護補助員을 두도록” 規定하였고, 同條第3項에서는 “保健社會部長官은 人力需給上 必要할 때에는 第1項第3號의 看護員 定員의 範圍內에서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비율에 따라 그 定員을 看護補助員(齒科醫療機關인 경우에는 齒科衛生士)으로 充當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看護補助員 醫療類似業者 및 按摩士에 關한 規則」第14條에서 令第24條第3項의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比率에 따라 看護員의 定員을 看護補助員으로 充當할 수 있는 比率”을 規定하고 있는데, 즉,

① 入院患者 5人以上을 收容하는 醫院에 있어서는 看護員 定員의 50% 以內.

② 入院患者 5人未滿 또는 外來患者만을 診療하는 醫院에 있어서는 看護員 定員의 100% 以內로 充當할 수 있도록 그 比率을 定하고 있다.

그러나 위 令第24條第3項의 規定은 現實參酌이라는 名分이 要點이기는 하지만 看護員의 需給狀況이 好轉된 현 단계에서 볼 때에는 二律背反의 規定인 것이다. 즉 母法인 醫療法 第25條에서는 免許證을 가진 看護員이 아니면 醫療行為를 할 수 없다고 規定해 놓고 施行令에서는 看護員 아닌 看護補助員으로 하여금 看護員 定員에 充當시켜 看護業務(醫療行為)를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음은 法第58條에 準用規程이 있다고는 하나 바람직한 方法은 못된다 하겠다.

現在로서는 그동안 看護員이 雖이 莫出되어充分히 確保된 이상 法의으로 保障된 看護員의 資格 免許와 權限 및 義務 等 全般的으로 混亂을 가져오게 하는 結果를 낳게 할 必要 없이 令第24條中 第3項을 刪除하고 아울러 保健社會部令으로 制定된 「看護補助員, 醫療類似業者 및 按摩

名稱	專門職與否	教育程度	教育年限	賦與之業務	試驗 및 免許發給區分
看護員	“醫療人”의 一種 專門看護分野	大學 또는 專門大學以上 卒業 入學水準: 高卒	3~4年	“醫療人”의 義務中 看護分野 業務	中央官署實施, 發給 (看護員免許證)
看護補助員	看護業務의 補助 人役	學院 入學水準: 中卒	9個月	看護業務의 補助業務	地方長官實施, 發給 (看護補助員資格證)

士에 關한 規則]第14條의 看護員 定員에의 充當比率 規定도 改正 刪除해야 할 것이다.

참고적 으로 看護員과 看護補助員은 法的 側面에서 區別하고 또한 看護補助員의 業務範圍를 要約해 보겠다. (위의 표 참조)

看護補助員의 業務範圍는 「看護補助員 醫療類似業者 및 按摩士에 關한 規則」第2條에서 規定하고 있는 바,

- ① 看護業務의 補助業務
- ② 診療業務의 補助業務
- ③ 看護員이 없는 곳에서의 看護業務로 되어 있다.

7. 助產員, 看護員의 呼稱

醫療法令上 醫療人 中 唯獨 助產員 및 看護員에 限하여 「師가 아닌 「員」으로 呼稱하고 있다.

이와 같은 呼稱은 歷史的으로 볼 때 助產員과 看護員은 女子만이 하는 職種으로 生覺하여 왔고 封建制度下의 女子의 位置는 男子에 從屬된 概念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大部分이 男子인 醫師밑에서 일하는 「員」으로 取扱되어 왔다.

그러나 現今에 와서는 獨立된 專門職으로서 他醫療職種과 對等한 位置에서 國民健康事業에 從事하고 있는 醫療人의 一種임을勘察하여 본다면 구태여 …「員」으로 呼稱할 必要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助產員」과 「看護員」을 「助產師」와 「看護師」로 名稱을 變更하는 것이 現實에 合當하다고 본다.

III. 結論

現行醫療法令으로서 基本法인 醫療法과 同法施行令 및 同法施行規則中 看護와 關係된 規定中에서 現實과 符合되지 않는 規定만을 表出하여 그 問題點을 提示하고 아울러 改善方案을 임략하게 論하여 보았다.

結論的으로 現行醫療法令이 看護員의 役割과 機能을 効果的으로 達行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現實에 맞지 않고 不合理한 規定은 과감히 改善되어야 할 것으로 안다. 또한 以上에서 지적한 問題(看護員 定員問題 等)에 對한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看護員의 法的地位向上을 위해 계속적인 看護法規의 研究와 새로운 看護制度의 創案 等이 要求된다.

따라서 改正 또는 制定될 醫療法令 中 看護와 關係된 法令은 國家大計를 위해 하루속히 國民健康을 구축하는 데 看護員의 機能과 役割을極大化할 수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

